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Information Society and Information Ethics

강성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NG, SUNG-MIN/Computer Communication Promotion Association of Korea

최 근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시각이나 견해는 다르다 할찌라도 누구나 정보사회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이나 개념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보사회는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을 근간으로 발아되고 성장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정보사회로의 진입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마련이며 사회변화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화의 주역으로서 정보산업을 이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에 의해 필연적으로 파급되는 사회적인 현상과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간과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인 도덕, 윤리, 법제도등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규범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정보사회로의 과도기적 전환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줄 뚜렷한 평가의 기준이나 척도또한 미미한 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기술 결정론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대한 우를 범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이 융합하여 새로운 신종 매체를 양산하고 기술의 발전속도가 정보의 유통구



조와 정보 이용자의 성향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폐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다행히 조금은 생소하지만 ‘정보윤리’란 신조어가 생겨나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을 정립하자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것은 꼭이나 다행스로운 일로 생각된다.

그러면 왜 ‘정보윤리’학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신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매체의 출현이 어떠한 사회적 병폐현상을 초래했는가에 대해 간단히 몇가지의 사례를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PC통신의 언어 폭력성 폐해 사례

전자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저질 프로그램이나 언어등은 모니터링 요원들의 검색을 통해 삭제할

수 있으나 채팅(대화)망은 특정가입자끼리만 주고 받는 코너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검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극심한 토론내용이 실정법 위반 시비를 낳는가 하면 비밀성과 익명성에 편승한 일부 청소년 이용자들의 폭력적인 언어가 '성폭언'에 충격을 받고 여중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을 발생시켰다.

2) 음란성 폐해 사례

국내 사설 BBS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중 일부 사설 BBS가 외국의 음란사설 BBS와 간단히 전화선으로 연결, 자극적인 음란물을 받아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는 사례로서 회비를 받고 음란성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상업형 사설 BBS도 등장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비밀번호(ID) 노출 폐해 사례

이용자 이름(ID)을 도용해 관련 비밀등을 빼내거나 관련 기술등을 빼내는 등 산업 스파이적인 폐해로 컴퓨터 통신망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설정이다.

4) 국가 보안법 위반 사례

전자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국가 전복을 조장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5) 범죄 이용 사례

통신망을 통해 상호 손쉽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음란물을 사고 팔고, 물건을 싸게 판다면 은행 온라인으로 송금을 요구하고 물건을 주지 않는 등의 사기 행각

6) 전화폭력과 성폭력 특별법 적용 사례

성폭력 특별법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은 전화, 우편, 컴퓨터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도서, 영상들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경우 1년이하

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음란전화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그동안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왔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폐해 사례는 음란한 내용의 공표와 범람에 관련되는 문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아직 통신매체 활용에 대한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이 정착되지 못한 도입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음란한 내용의 확산이 일으키는 폐해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이른바 '이적물'의 전파와 확산, 지적 재산권의 침해에 관련된 법규 위반과 이에 관련된 공방이나 어디까지가 단속대상이고 규제 대상인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형편에서 갈수록 이에 관련된 미묘한 문제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성, 미음성등이 혼합된 복합 매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기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통신매체에 대한 제재나 각종 신기술들을 이용한 통신의 역기능적 폐해를 막기위한 종합적인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재되어 있는 관련법규나 관련 조항에 따라 사안별로 법적용을 하는 형편인지 전문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모두 고려한 일관성있는 법제도의 정비야 말로 유해 통신매체의 퇴치나 정화를 위해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정보통신의 발전이 우리의 사회를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못지 않게 사회적인 병폐 현상이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을 결코 묵과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불온통신의 근절과 정보윤리 확립위해 설립된 '정보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실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정보윤리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살

펴보면 전화정보서비스(700번서비스) 의사전심의와 사후통제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 신종매체라 할 수 있는 전화 정보서비스의 경우 일부 사업자들의 불법 퇴폐적인 내용의 불건전 정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의 활동은 정보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연적인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사전 심의의 한계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의 제도로 인해 사업자의 의욕이나 사업영역이 다소 위축되는 폐단은 있을지 모르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만벌면 된다는 사업자가 잔존하는 한 어쩔수 없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겠다.

불법과 편법을 통해 불건전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정보 이용자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외면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윤리문제에 관한 한 기준의 신문이나 방송등 매스미디어는 물론이고 간행물의 발행에 있어서도 윤리문제가 크게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기존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윤리성은 사회적 기대에 크게 부족함이 없이 통제되고 있으나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뉴미디어 체제에서는 정보의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윤리 개념의 정립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재화가 상품이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 자체가 상품인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윤리는 그 범위와 방향설정에 따라 종전과는 전혀 차원을 달라하는 정보윤리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산업사회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사업을 영위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곧 상품이므로 정보제공사업자는 정보의 판매로 사업을 영위하게 마련이며 이때의 정보제공사업자는 상품제조판매업자나 마찬가지로 정보에 대

한 공정거래 여부, 과대광고 선전여부, 불량정보 제공여부 등에 의해서 평가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정보윤리는 기존의 미풍양속과 건전정보차원의 윤리범위를 넘어서 정보상품으로서 공정거래 차원의 정보윤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원격진료, 원격교육, 홈쇼핑, 등이 가능한 정보사회에서 종래 인간과 인간이 서로마주보며 일을 처리하는 시대와는 현격히 틀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할 정도로 벌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원격 진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수준에 와 있다 하더라도 오진에 의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법,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원격 교육에 관한 교육이수에 대해 교육의 인정은 누가 할 것이며 사회적인 신분보장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화면상의 제품을 보고 통신주문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반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지금과는 현격하게 달라질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대두될 것이며 21세기를 몇년 앞으로 둔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보윤리’의 확립이 중요시되고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불건전한 정보의 단속과 규제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전개될 전혀 새로운 사회의 질서와 통념을 수용하는 새로운 사회의 윤리 규범으로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도덕이나 규범, 법, 질서에 선행되는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윤리 확립이라는 말로 새로운 사회의 가치 체계 정립의 근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질서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축으로 정보社会의 진입이 시작되었다면 정보윤리를 축으로 정보사회가 성숙되어야만 진정한 정보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DB